

# 전기제품 PL상담센터 발표

지난 4월중 이루어진 PL상담건수는 모두 28건이었으며, PL상담록과 제품별 회의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을 발췌하여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물론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2006. 4. 1~4. 29)

일자	상담품목	상담방법	상담 내용	조치 사항
4.3	전기온풍기	전화	납품받는 업체에서 PL보험가입 및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품업체에서 책임지라는 계약서 강요	부품업체와도 기본계약을 철저히 하여 문서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 함.
4.7	전기마사지기	내방	소비자가 임의로 제품을 개조하여 사용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체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개조의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4.14	배선기구	전화	제품을 납품한 후에 부도가 났을 때도 제품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PL법에 의해서 보상해야 하나?	피해보상을 하여야함. (사건 경위에 따라 제조업체 등이 책임이 있음)
4.17	엠프내장형 스피커	전화	제품 및 코드에 붙이는 PL관련 주의·경고 사항의 글씨 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나?	국내 규정은 없음
4.20	스위치, 콘센트	내방	“습한 곳에서 사용하지 말 것” 이란 문구를 경고문구에 포함하려 하는데 실제로 소비자가 “습한 곳”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 설명서에 자세한 명기가 필요함
4.24	전기녹즙기	전화	외국에서 사온 전기제품은 사고 발생 시 PL법에 해당되는지?	국내 PL법에는 해당안됨
4.26	전기뜸질기	전화	사용자의 오용/남용으로 인한 사고 피해시 보상처리는?	국내 PL법에는 해당안됨
4.28	전기매트	전화	사용자의 오용/남용으로 인한 사고 피해시 보상처리는?	정상 참작하여 과실상계적용 : 대개의 경우 8:2 / 7:3 (예상) (제조가의 과실을 경감)